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. 12.15. 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	세	충	자	:	충청북도지시	ŀ
l J	1 11	7		•	() () 1 1 1	

- □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13일
 -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- □ 상정일자 :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- 2008.12.3 :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

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·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문화관광환경국장 박 대 현)

- □ 제안 이유
 -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채택한「의제21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, 도민 등과 함께 민간 주도로 지구환경 보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음
 - 충청북도에서는 '97년 12월 「청풍명월21」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는 충북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- □ 주요 내용
 -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(안 제2조)
 - 협의회의 구성(안 제3조)
 -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 - 경비지원 대상사업(안 제10조)
 -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정산(안 제11조)
 -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윤 영 해)

-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
- 97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조례의 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한 사유와 타 광역단체의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수정안 요지

수정이유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"부협의회장"을 각각 "부회장"으로 하고
-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당연직 위원과 중복되는 "도의원"을 삭제 하고자 함

수정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"부협의회장"을 각각 "부회장"으로 하고
-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중 "도의원"을 삭제 한다
- 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- 8. 소수일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12. 3.

제안자: 이기동 의원 외 6인

수정이유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"부협의회장"을 각각 "부회장"으로 하고
-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당연직 위원과 중복되는 "도의원"을 삭제 하고자 함

수정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"부 협의회장"을 각각 "부회장"으로 하고
-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중 "도의원"을 삭제 한다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과 같이 수정 한다.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"부협의회장"을 각각 "부회장"으로 하고
-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중 "도의원"을 삭제한다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	제3조(구성) ①
<u>부협의회장</u> 2명을 포함한 100명이내의	부회장
위원으로 구성한다.	
② (생략)	② (원안과 같음)
1. (생략)	1. (원안과 같음)
2. (생략)	2. (원안과 같음)
가. 기업인, 학계, 민간단체, 도의원 등	<u>가. 기업인, 학계, 민간단체 등</u>
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자	
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	③
<u> 부협의회장</u> 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	부회장
한다.	
제5조(직무) ① (생략)	제5조(직무) ① (원안과 같음)
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	②
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한 <u>부협의회장</u>	<u></u>
이 직무를 수행한다.	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	제7조(운영위원회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, <u>부협의회장</u>	② <u>부회장</u>
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	
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	
이 된다.	
③ (생략)	③ (원안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원안과 같음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도민, 기업, 행정기관, 사회단체 등의 참여유도
 - 2. 각종 오염행위 감시 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
 - 3. 청풍명월21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 체계 구축
 - 4.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대안건의
- 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당연직
 - 가.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
 - 나.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, 건설방재국장
 - 2. 위촉직
 - 가. 기업인, 학계,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자
 - 나.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

- 제4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직무)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.
 - 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.
 -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1.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
 - 2.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
 - 3.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.
- 제8조(위원의 위촉해제) 협의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- 제9조(사무처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, 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10조(경비의 지원)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추진
 - 3.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
 - 4.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
 - 5. 청풍명월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
 - 6.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
 - 7.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제11조(지원방법 및 정산) ① 협의회에 대한 충청북도의 보조금은 반기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다.
 -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「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감독)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제13조(협의회 규정)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 및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

- 제24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 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도는 시·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도는 도민, 사업자,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·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,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4조(기금의 사용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1.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
 - 2.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」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 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
 - 3.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
 - 4. 생태계, 생물종의 보존·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
 - 5.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
 - 6.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